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 일시	2022. 12. 8.(목)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TF	책임자	과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정치환 (044-202-8912)

위험성평가 제도는 「자기규율 예방체계」의 핵심수단으로 노사가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

- 정부는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.

1. 주요 기사 내용

□ 12.8.(목) 한국경제, 산업계 “정부 개선책도 처벌은 오히려 강화”

- ...[전략]... 산업계는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“오히려 처벌·감독 규제가 강화된 부분은 문제”라고 지적한다. ▶ 상습·반복,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, ▶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, ▶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이 대표적이다.
- 산업계 관계자는 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상당한 부담”이라며, “노사가 모두 협력해 사고를 예방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.”라고 말했다.

2. 설명 내용

□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.30.에 발표된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은 기존 규제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감축전략 패러다임을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

-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·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 책임을 부여하고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중소기업, 건설·제조업, 추락·끼임·부딪힘, 하청사고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핵심전략을 담고있음

- 보도에 언급된 상습·반복, 다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,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무관용 처벌,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에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,
 -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기업에는 해당사항이 없음
 - 아울러,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평상 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중히 따져 수사자료에 포함할 계획임
- 한편,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와 관련하여,
 -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, 시설 등을 집중 지원하고, 민간 기술지도와 재정지원 사업도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임
-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·이행하는 제도로,
 - 선진국은 이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·이행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메가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음
 -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,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·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·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 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함